

# 서울특별시영등포구통합관리기금설치조례(안)

## 심 사 보 고 서

2006. 2.  
행정위원회

### 1. 審 査 經 過.

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06년 2월 17일 오인영의원외 5인

나. 회부일자 : 2006년 2월 17일 회부

다. 상정일자 : 2006년 2월 21일

제119회 임시회 제2차 행정위원회 상정의결

### 2. 提 案 說 明 의 要 旨 (제안설명자 오인영 의원)

가. 제안이유

- 각 기금별로 자금을 운용·관리함에 따라 수익성 저하로 사업수행에 한계성을 초래하고 있으므로, 우리구 재정의 건전성 향상과 자금의 수익 증대를 도모할 수 있도록 각 기금별 여유자금을 한 곳으로 모아 관리·운용 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각 기금의 보유자금 등을 재원으로 각 기금별 목적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공공의 목적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 공급하기 위해 통합관리기금을 설치.(안 제1조)
- 통합관리기금의 용도는 지역 SOC사업 등 도시기반시설의 조성에 소요되는 자금의 용자, 다른 기금에 대한 자금의 용자, 기타 구청장이 인정하는 특수사업에 대한 용자 등의 사업의 용도로 운용됨.(안 제6조)
- 기금 및 통합관리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·관리하기 위하여 통합관리기금 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하며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1인 이내로 함.(안 제10조)

### 3. 專 門 委 員 의 檢 討 報 告 要 旨 (專門委員 김찬재)

- 행정자치부에서는 6년 전부터 기금운용에 관한 개선사항으로 통합관리기금 조례안을 시달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조례 제정을 권장하였으며,
- 2005년8월4일 제정되어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16조에도 통합관리기금을 설치·운용할 수 있도록 하여, 서울특별시를 비롯해 총43개 지방자치단체(광역15, 기초28:서울시 자치구5)가 통합관리기금조례를 제정하여 통합관리기금을 설치·운용하고 있으며,
- 본 조례안은 행정자치부 표준안과 구로구의 통합기금 운용실태를 참작하여 제정되었고, 상위법령 및 행정자치부의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 기본지침에 부합되므로 적정하다고 판단됨.

### 4. 審 査 結 果 : 原 案 可 決